2018년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8년 12월 20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지원 위원

- 4. 결석위원 없음
-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 사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신 운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민 좌 홍 금융결제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현 기 공보관

성 광 진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40호 -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12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체계는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보고서 작성방향은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장금리 상승압력 등의 여건 하에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정책대응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또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stresstest) 모형 개발, 소득측면에서의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 기업 재무건전성의 특징 및 시사점 등 다양한 이슈(issue)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음.

이어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금번 보고 서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전반적으로 잘 평가하였고 시의성 있는 새 로운 주제들도 많이 다루었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 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들 을 부문별로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이 낙관적으로 해석 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 부동산금융 익스포저(exposure) 증가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보다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들은 금융안정지수의 산출기준, 각 단계별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상업용 부동산시장 분석에 대해 투자수익률 상승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부동산금융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이 주로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에 기 인하여 증가한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레버리지

(leverage)비율 산정 시 제외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리스크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복원력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국내은행의 LCR이 규제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주요국 은행들에 비해 크게 낮은 점에 유의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생명보험사의 자본 확충과 관련하여 시장금리 상승이 조달여 건을 악화시키는 측면과 함께 수익성 제고 등 생명보험사에 유리한 면도 있으므 로 이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현재 대외지급능력을 외화유출에 대한 방어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향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CLS 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상승한 이유를 보다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현안분석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대하여 시나리오에서 상정한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도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상당한충격이 나타나는 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소득측면에서의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DSR이 100%를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자산측면에서 부채상환능력이 높은 경우에도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DSR 수준이 기초통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동 분석에서 주로 가계부채DB를 활용한 이유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DSR 규제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차주의 DSR을 규제 기준이 아닌 실질부담 기준으로 보정하여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통화정책방 향 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서 금융안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있다고 언급 하였음.

이어 이번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그간 금통위에서 논의되었던 가계부채 누증 문제와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 등이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세부적인 분석내용에는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보이는 등일부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예컨대 보고서의 현안 분석 중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보면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30%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외환위기 시의 주택가격 하락률이 이에 훨씬 못 미쳤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동 테스트 결과가 다소 낙관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통화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금융안정을고려하고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버블(bubble)이 생겼다가 꺼질 때 금융시스템, 특히 은행부분이 큰 영향을 받고, 그 결과 신용 경색과 함께실물경기 하락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첨언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번 결과는 금리가 300bp 상승하거나 주택가격이 30% 하락할 경우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지만 금융기관들의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12월)(안)(생략)

<의안 제41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10항 및 제81조에 의거 국제기 준에 맞춰 차액결제 참가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현행 50%인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고, 이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국채 위주인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 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정책변경 시 사전에 충분한 고지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계획이 참가은행들에게 사전에 고지된 사안인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2016년중 당행이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단계적 인 상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고, 2017년에는 금융감독당국의 LCR 규제를 감안하여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을 한 차례 연기하였으며, 이번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도 은행들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9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 정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위원은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유사시 차액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대출을 통해 차액결제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를 원칙적으로 당행 대출용 담보와 연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담보증권 범위 확대는 참가은행간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유사시 당행 대출 담보로 사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체 담보증권 중 이번에 추가되는 적격담보증권의 납입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유관부서에 논의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이번에 적격담보로 산금채, 중금채, 그리고 수출입금융채를 추가한 것과 관련하여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또한 국책은행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국책은행 발행증권만을 적격담보로 추가할

경우 일반은행채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들 채권의 경우 명시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하지는 않지만 해당기관에 대한 결산 시 손실금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적격담보 범위를 처음으로 확대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향후 담보증권 범위 확대 시에는 후보증권 간 형평성 문제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그리고 일부 위원들은 이번에 확대되는 적격담보에 긴급 시 총재가 정하는 증권이 추가된 배경에 대해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담보범위를 확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 면서, 이와 관련하여 '긴급 시 비상조치'라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 다는 위원 의견에 따라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하는 증권'으로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고 첨언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산금채, 중금채, 그리고 수출입금융채에 대한 담보인 정비율 수준에 대해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들 채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기본적으로 주택금융공사 MBS에 적용된 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며, 그 수준은 90~96%라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이번 규정 개정은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은행들의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당행 대출 담보와는 다르나, 중앙은행 제도라는 것이 원래 결제시스템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시스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중앙은행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를 당행 대출용 담보와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대출 담보를 비교해 보면 미 연준, 일본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발전이나 양적완화정책의 추진 과정 등을 통해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있는 데 비해, 당행대출 담보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언급하였음. 다만 금융통화위원회가 동 담보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유사시를 대비하여 관련 연구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첨언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번에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춰 차액결제 참가은행들의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50%에서 100%까지 인상하되 이에 따른 동 은행들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조치이며, 중앙은행대출 담보범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심층 연구가 필요해보인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생략)